

직제규정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	1
제2조(적용범위)	1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	1
제4조(정원)	2
제5조(직급 및 직위)	2
제6조(겸직)	2

제3장 직제 및 권한

제7조(위원장)	2
제8조(부위원장)	2
제9조(사무총장)	2
제10조(부서)	2
제11조(보직기준)	2
제12조(권한의 위임)	2
제13조(직무대행)	2
제14조(임시조직의 설치)	2

제4장 삭제

제15조 삭제	
제16조 삭제	
제17조 삭제	
제18조 삭제	

부칙	3
----------	---

별표

1. 삭제	5
2. 정원표	5

직제규정

제	정	2007. 6. 22.	
개	정	2008. 1. 7.	
개	정	2008. 12. 24.	
개	정	2009. 12. 29.	
개	정	2012. 1. 10.	
개	정	2014. 1. 20.	
개	정	2015. 12. 3.	
승	인	2015. 12. 15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2841호
개	정	2016. 1. 29.	
승	인	2016. 2. 15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481호
개	정	2016. 12. 21.	
승	인	2017. 1. 10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151호
개	정	2017. 12. 28.	
승	인	2018. 2. 7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499호
개	정	2019. 5. 16.	
승	인	2019. 6. 10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2159호
개	정	2019. 12. 9.	
승	인	2020. 1. 1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4254호
개	정	2020. 12. 18.	
승	인	2020. 12. 29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6469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하 “도핑방지위원회”라 한다)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 <개정 2008.12.24., 2016.1.29.>

제2조(적용범위)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와 그 권한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16.1.29.>

제2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경영본부 및 사업본부를 두며, 기획조정부, 운영지원부, 국제협력부, 교육홍보부, 도핑검사부, 과학연구부, 법제조사부를

둔다.<개정 2014.1.20., 2016.1.29. 2017.1.10., 2018.2.7., 2020.1.1., 2020.12.29>

- ② 사무국의 부서별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한다. <신설 2014.1.20.>
-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와 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제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. <개정 2014.1.20., 2016.1.29., 2020.12.29>
-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치료 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. <개정 2014.1.20.>
- ⑤ 삭제 <2020.12.29>

제4조(정원)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총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4.1.20.>

- ② 총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, 직급별 정원을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0.>
- ③ 삭제 <2014.1.20.>

제5조(직급 및 직위) ① 도핑방지위원회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20.>

- ② 삭제 <2014.1.20.>

제6조(겸직)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.

제3장 직제 및 권한

제7조(위원장) 위원장은 도핑방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
제8조(부위원장)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사무총장)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회에서 의결된 도핑방지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책임진다.

제10조(부서)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본부·부에 본부·부장을 둔다.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20.1.1>
② 실·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소속 부원을 지휘·감독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4.1.20.>

제11조(보직기준) ① 본부장은 일반직 1급부터 2급까지, 부장은 일반직 2급부터 3급까지로 보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위급 직원을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16.1.29., 2020.1.1>
② 보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권한의 위임) ① 위원장은 도핑방지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사무총장은 도핑방지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부장·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20.1.1>

제13조(직무대행)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사무총장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본부장·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20.1.1>
- ③ 본부장·부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 직위자가

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직무 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20.1.1>

제14조(임시조직의 설치) 특정업무 수행 또는 도평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,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업무분장 <삭제 2014.1.20.>

제15조 삭제 <2014.1.20.>

제16조 삭제 <2014.1.20.>

제17조 삭제 <2014.1.20.>

제18조 삭제 <2014.1.20.>

부칙 <2007.6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1.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1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1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2.15.>

직제규정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1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서 신설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의 연구조사부는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주무부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.

부칙 <2018.2.7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6.10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1.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12.29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8.1.7., 2008.12.24.> <삭제 2014.1.20.>

[별표 2] <개정 2008.1.7., 2009.12.29., 2014.1.20., 2015.12.15., 2016.7.29., 2016.12.21., 2019.6.10., 2020.1.1.>

정원표

구 분	사무총장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총계
정 원	1	1	2	6	8	11	16	45